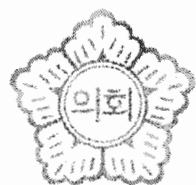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2019. 7.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86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7월 15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7월 16일(수)

2. 제출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 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28조제4항)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략 규정사항 개정(안 제3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안 제22조 제1항)
-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7조)
- 2인 이상의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89조제2항)

다. 기타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입법예고: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다.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없음
- 라.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마.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동의
- 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 ·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28조 제4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하는 사항은 사회에서 소외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감면율을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업 대상에 따라 안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와 안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와 같이 대부요율(1%) 적용대상(사회적기업)과 감면율(50%) 적용대상(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감면규정

규정	대상	감면율
제17조 (사용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5조 (대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100분의 50 이내

〈표2〉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감면규정

규정	대상	감면방법
제25조 (대부료 등의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대부료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 기 시행
제28조 (대부료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감면율: 100분의 50이내 ※ 개정안

- 안 제3조의 2의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재산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 22조제1항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 안 제27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총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고자하는 것은 업무편람의 지침 변경내용에 따라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포함 15개 조례 개정(참고자료 현황 참고)
- 기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참 고 자 료

1. 자치구 조례 ‘층별 가중 적용방법’ 삭제 여부

□ 삭제: 15, 미삭제: 11

2019.06.30. 기준

연번	자치구명	삭제여부	개정일
1	서울시	삭제	2017. 03. 23.
2	종로구	삭제	2018. 09. 28.
3	중구	미삭제	
4	용산구	미삭제	
5	성동구	미삭제	
6	광진구	미삭제	
7	동대문구	미삭제	
8	중랑구	삭제	2017. 09. 08.
9	성북구	미삭제	
10	강북구	삭제	2016. 12. 30.
11	도봉구	삭제	2016. 12. 29
12	노원구	삭제	2017. 03. 16.
13	은평구	삭제	2017. 12. 29.
14	서대문구	미삭제	
15	마포구	미삭제	
16	양천구	삭제	2018. 06. 28.
17	강서구	삭제	2017. 04. 05.
18	구로구	삭제	2017. 11. 16.
19	금천구	삭제	2019. 05. 09.
20	영등포구	삭제	2019. 06. 28.
21	동작구	미삭제	
22	관악구	삭제	2017. 07. 20.
23	서초구	삭제	2017. 10. 26.
24	강남구	미삭제	
25	송파구	삭제	2017. 11. 02.
26	강동구	미삭제	

※ ‘층별 가중 적용방법’ 조항 삭제 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

2.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13조(사용 · 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1.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